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24년 4월 25일  
행정재경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4월 15일, 이인식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4월 1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 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4월 25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# 가. 제안이유

-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장애의 관리와 치료와 관련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바,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계획 수립과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강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의 수립(안 제5조)

-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 지원(안 제6조)
- 사업 등의 위탁 및 재정지원(안 제7조 및 제8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과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주요내용은
  -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
  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
  -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한 금천구민의 적극 협력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  -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
  -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
  -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위탁에 대하여
  -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위탁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 사업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권 향상을 위한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,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생략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